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923
------	------

2017. 8. 31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6월 28일, 김용석(서초)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8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】

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17.8.31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용석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현 조례는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법률로 하고 있으나 이 법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률 및 시

행령을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자 함.

- 현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(1)부시장이 이사장을 맡도록 하고 있으나, 타 조례와의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장이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변경함.

2. 주요내용

- 근거 법령을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1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조례안의 개요

- 본 조례안은 서울산업진흥원의 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명수를 10명으로 줄이고 이사를 이사 중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근거법령의 변경

-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1998년에 설립되었음.
- 국회는 2016년 3월에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면서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폐지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1조는 변경된 근거법령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.

다. 이사회의 구성 현황

-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르면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

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- 안 제7조는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의 이사가 9명인 점을 감안하여 이사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10명 이내로 조정하고 다른 출자·출연기관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서울시 행정(1)부시장에서 이사 중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는 것임.
 - 현재 서울시의 출자·출연기관 중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없음.
- 본 개정안은 이사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사장을 이사 중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여 이사회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 서울산업진흥원이 경영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출신 이사 3명을 추가할 계획에 있어 안 제7조와 같이 10명 이내로 규정할 경우 이사의 정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이사 정수를 정할 필요가 있음.
 - 현재 이사 9명 중 내부인사와 관계공무원이 총 6명으로 내부와 외부위원 간의 수적 균형 확보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3명의 이사를 증원할 예정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23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8월 31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산업진흥원이 경영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출신 이사 영입 등 이사의 정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사의 정수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사의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양성 평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에서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추가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“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”를 “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”로 하고 단서에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추가함(안 제7조)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 “① 재단은”을 “재단은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의 “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”를 “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”로 하고 단서에 “다만 이사회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신설한다.

<p>②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행정(1)부시장이 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서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<u>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	---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조의 “① 재단은”을 “재단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</u>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재단의 사업) ① <u>재단은</u>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·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~11. (생략)</p>	<p>제5조(재단의 사업) <u>재단은</u>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·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~11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임원) ① 재단에는 <u>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</u>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 ② <u>이사장은 서울특별시 행정(1)부 시장이 된다.</u> ③ ~ ④ (생략)</p>	<p>제7조(임원) ① 재단에는 <u>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</u>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 <u>다만 이사회</u>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<u>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</u> 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